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7. 11. .
제 출 자 : 성주군수

1. 개정이유

○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·처분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(공포 '06. 12. 30)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현행 조례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에서 이미 규정한 조항 삭제

1)「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」제29조(토지의 지하·지상공간에 대한 평가)는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제31조 제6항에 이미 규정된 사항으로 삭제코자 함.

2)「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」제44조(분수림의 설정)는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제47조의 삭제('06.12.30 개정)로 조례에서도 해당 조항을 삭제코자 함.

나. 인용조문의 수정 및 추가

-「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」제32조(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) 중 「외국인 투자촉진법」제13조 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을「외국인 투자촉진법」제13조 제8항 및 영 제19조의 규정으로 인용 조문을 수정함.

-「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」제32조(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) 중 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제43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사항을 추가 규정함.

· 중앙행정기관 : 대부료 감면율 100분의 80
· 기타공공기관 : 대부료 감면율 100분의 50

다. 공유재산관리조례 상 중복 규정 삭제 및 동조항 내용개정

-「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」제40조제1항제1호를 제4호에 중복 규정하고 있으므로, 제1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가 소규모 면적에 미달하는 경

우 동규모의 면적 범위 내에서 수의매각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200㎡를 한도로 제한하는 규정을 보완함.

라.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상향조정

-「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」제64조(은닉재산에 대한 보상금 지급)에서 총보상금의 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관인도용 또는 위조 및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항을 신고 시 필지별 200만원에서 600만원을 한도로 상향조정 및 위 사항을 제외한 기타재산을 신고한 자는 필지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공문

- 도 회계과-8636호(2007. 8.02)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
- 도 회계과-9167호(2007. 8.20)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 정정

나. 예산관련사항 : 해당없음

다. 개정조례안 : 붙임

라. 신・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마. 입법예고 결과 : 해당없음

성주군 조례 제　　호

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9조를 삭제한다.

제32조 본문중 “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”를 “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제13조 제8항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”로 하고,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, 제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중앙행정기관 ：100분의 80
2. 기타 공공기관 ：100분의 50

제39조 본문 중 ″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”로 한다.

제4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, 동항제4호중 “(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 범위내의 토지 포함)”을 “(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㎡를 한도로 한다)”로 하며, 동조 후단의 “매각할 수 있다.”를 “매각할 수 있으며, 매각 시 잔여지가「건축법」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제44조를 삭제한다.

제64조 본문중 “1,000만원”을 “3,000만원”으로 하고, 동조 제1호 본문중 “200만원”을 “600만원”으로 하며, 동조 제2호 본문중 “100만원”을 “300만원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개정사유
제29조(토지의 지하ㆍ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)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.	**제29조 < 삭 제 >**	상위법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 개정
제32조(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)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·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(이하 이 조에서 "대부료등"이라 한다)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~ 3. **(생 략)** **< 신 설 >**	**제32조(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) ①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제13조제8항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**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1. ~ 3. **(현행과 같음)** **② 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.** **1. 중앙행정기관 : 100분의 80** **2. 기타 공공기관 : 100분의 50**	
제39조 (조성원가 매각) 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,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(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)와 투자개발비(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)로 한다. 1.내지 4. (생 략)	**제39조 (조성원가 매각)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**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1.내지 4. (현행과 같음)	
제40조 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)①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. **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(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을 포함한다.)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(읍·면지역에서는 1,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)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** 2. 및 3. (생 략)	**제40조 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)①**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1. **< 삭 제 >** 2. 및 3. (현행과 같음)	

현 행	개 정 안	개정사유
4.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2,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30일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(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)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**(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)**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때.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2,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내에서 분할 매각할 수 **있다.**	4. ----------**(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㎡를 한도로 한다)**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때.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2,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**있으며, 매각시 잔여지가 「건축법」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.**	
제44조(분수림의 설정) 영 제47조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.	**제44조 < 삭 제 >**	
제64조(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)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, 총 보상금은 **1000만원을 초과할수 없다.** 1.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**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**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. 가. 및 나. (생 략) 2.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을 신고한자에 대하여는 **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**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.	**제64조(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)** ----------**3,000만원을 초과 할수 없다** 1. ----------**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** ----------. 가. 및 나. (현행과 같음) 2. ----------**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** ----------.	